

## 시각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

### □ 세부유형 : 시력장애

구비서류	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
1.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	- 최대 교정시력(굴절력)과 진단소견을 기재
2. 소견서	- 시각장애용 소견서(규정서식 사용)
3. 검사결과지	- 전안부 사진 : 각막 또는 수정체 이상, 의안이 장애의 원인인 경우 - 칼라 안저사진 : 당뇨망막병증, 녹내장 등과 같이 망막 또는 시신경이 장애의 원인인 경우 ※ 시신경 손상의 경우 시유발전위검사* 결과지 제출 필요 (장애심사 과정에서 빛간섭단층촬영검사 등의 추가검사가 필요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음)
4. 진료기록지	- 주요 경과기록지 및 퇴원요약지 :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것으로 제출 ※ [원인상병(진단명), 치료경과,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,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한 만큼 모두 제출함]
<p>☞ 추가 안내사항</p> 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f0f0f0; padding: 10px; margin: 10px 0;"> <p><b>* 시유발전위검사</b></p> <p>- 눈이 빛이나 문양(무늬)에 의해 자극을 받을 때 대뇌의 시각인지 부위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기록한 검사</p> </div> <p>※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·제출하셔야 합니다.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background-color: #f0f0f0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<b>[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]</b></p> </div> <p>-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, 겹보임(복시)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</p>	

#### 최저 장애정도 기준

- 좋은 눈의 시력이 0.2 이하인 사람
- 좋은 눈은 0.2 초과하나, 나쁜 눈의 시력이 0.02 이하인 사람

## 시각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

### □ 세부유형 : 시야장애

구비서류	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
1.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	- 일정 각도 내의 시야상태를 보기 위해 골드만시야계 또는 험프리시야계 등 공인된 시야계로 측정한 시야제한 정도와 최대교정시력(굴절력) 및 진단소견 기재
2. 소견서	- 시각장애용 소견서(규정서식 사용)
3. 검사결과지	- 망막(안저)사진, 시야검사결과지 등 모두 제출 ※ 장애심사 과정에서 빛간섭단층촬영검사 등의 추가검사가 필요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음
4. 진료기록지	- 주요 경과기록지 및 퇴원요약지 :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것으로 제출 ※ [원인상병(진단명), 치료경과,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,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한 만큼 모두 제출함]
<p>※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·제출하셔야 합니다.</p>	
[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]	
<p>-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, 겹보임(복시)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</p>	

#### 최저 장애정도 기준

-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
-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% 이상 감소한 사람

## 시각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

### □ 세부유형 : 겹보임(복시)

구비서류	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
1.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	- 마비사시 혹은 제한사시로 인한 프리즘 교정 전 사시각 정도 및 진단소견 기재
2. 소견서	- 시각장애용 소견서(규정서식 사용)
3. 검사결과지	- <b>교정 후 시행한</b> 공인 동적 복시시야검사, 사시각 검사 제출 ※ 필요시 Hess Screen 및 안구 운동사진 제출
4. 진료기록지	- <b>주요 경과기록지 및 퇴원요약지 :</b>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것으로 제출 ※ [원인상병(진단명), 치료경과,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,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한 만큼 모두 제출함]
<p>※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·제출하셔야 합니다.</p>	
<p><b>[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]</b></p>	
<p>-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, 겹보임(복시)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</p>	

#### 최저 장애정도 기준

-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(복시)이 있는 사람